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1.03.09 (수) 14:00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민병완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김희수 의원 외 6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1년 2월 25일

나. 회부일자 : 2011년 3월 2일

3. 제안 이유

-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조문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함(안 제3조제2항)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3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